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에 둔다.

안 제4조 내지 11조를 제5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입주대상)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 소프트웨어 업체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업체
3. 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청주시에 두며,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p> <p>(신설)</p>	<p>제2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에 둔다</p> <p>제4조(입주대상)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2. 소프트웨어업체로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업체 3. 기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p>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p> <p>(신설)</p>	<p>제5조 내지 제12조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